

패스트푸드 근로자의 최저 임금 2016년 12월 31일부터 2017년 12월 30일까지

\$12.00

뉴욕 시

\$10.75

그 외 지역

패스트푸드 근로자를 위한 신규 최저 임금이 2016년 12월 31일부터 위와 같이 적용됩니다. 뉴욕시의 경우 최저 임금이 \$15.00가 되는 2018년 말까지, 그 외의 지역은 2021년 중반까지 임금이 매년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 안내문은 새로운 최저 임금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합니다.

패스트푸드 음식점이란 무엇입니까?

패스트푸드 음식점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업체를 지칭합니다.

- 카페, 주스 바, 도넛 가게, 아이스크림 가게를 포함하여 주로 음식 또는 음료를 제공하는 업체 및
- 테이블이 마련되어 있으나 종업원이 음식을 가져다 주고 식사를 돕는 서빙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과 포장 판매(take-out) 서비스만 제공하는 곳을 포함하여 고객이 주문한 음료나 음식을 섭취하기 전에 돈을 지불하는 제한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및
- 전국적으로 30개 이상의 지점이 있는 특정 상표와 연관된 개인 소유 사업장을 포함하여 30개 혹은 그 이상의 지점을 가지고 있는 체인점에 속해 있는 업체.

예:

패스트푸드 음식점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Ben & Jerry's, Chipotle, Dunkin Donuts, Golden Krust Caribbean Bakery and Grill, Jamba Juice, KFC, McDonald's, Nathan's Famous, Pizza Hut, Quiznos, Shake Shack, Starbucks, Subway, Taco Bell, Tim Hortons, Uno Pizzeria & Grill, Wendy's, 및 White Castle.

더욱 포괄적인 사업체 목록이 임금 위원회 보고 및 권고의 일환으로 공지되었으며, 이는 www.labor.ny.gov/fastfoodwageboard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목록은 변경될 수 있으며 패스트푸드 음식점으로 판단되는 업체 고용주에 예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패스트푸드 음식점의 정의 및 체인점 규정 기준에 대한 더욱 자세한 정보는 www.labor.ny.gov/formsdocs/wp/CR146.pdf에서 서비스 업종에 관한 규정(Hospitality Industry Regulations)을 참조하십시오.

패스트푸드 근로자의 시간당 최저 임금을 인상에 대한 전체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날짜	뉴욕 시	그 외 지역
2016년 12월 31일	\$12.00	\$10.75
2017년 12월 31일	\$13.50	\$11.75
2018년 12월 31일	\$15.00	\$12.75
2019년 12월 31일	\$15.00	\$13.75
2020년 12월 31일	\$15.00	\$14.50
2021년 07월 1일	\$15.00	\$15.00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유형의 근로자가 해당 최저 임금 상승에 영향을 받습니까?

변경 사항은 1페이지에 기재된 요건을 충족하는 패스트푸드 체인점에서 근무하는 모든 이를 대상으로 합니다. 해당 임금 상승은 조리, 보안, 창고 관리, 청소 및 기타 업무를 행하는 모든 근로자에 적용됩니다.

이 변경 사항이 단일 프랜차이즈 음식점 소유주에게도 적용됩니까?

이 변경 사항은 소유 여부와 무관하게 전국적으로 30개 이상의 지점이 있는 모든 패스트푸드 체인점에 적용됩니다.

패스트푸드 근로자의 식사 크레딧과 유니폼 유지 보수 보상 요율이 다른 서비스 업종 종사자와 다릅니까?

아니요, 해당 요율은 패스트푸드와 다른 서비스 업종 종사자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출근 수당(call-in pay) 나 근무 공백(spread of hours) 에 따른 임금 지급 규정은 어떻게 됩니까?

패스트푸드 근로자는 근무 외 시간 급여 및 근무 공백 요건에 대해 패스트푸드 최저 임금을 기준으로 한 수당이 적용됩니다.

패스트푸드 근로자는 초과 근무 수당 자격이 있습니까?

예, 패스트푸드 근로자에게는 주당 40시간 이상 근로한 모든 근로 시간에 대해 본인 기본 급의 1.5배의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기타 정보 문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거나 불만 사항 접수를 원하는 경우,
 1-888-4NYS DOL (1-888-469-7365)번으로 연락해 주시거나 다음 웹 사이트를 방문해
 주십시오. www.labor.ny.gov/minimumwage.